

# 공유재산 [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레스토랑] 사용·수익허가서

허가번호 : 제 2022 - 0호

허가 기관	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		
사용자	상 호		사업자등록번호
	대 표 자		법인등록번호
	전화번호		F A X 번 호
	주 소		
사용 수익 허가 조건	허가 재산명	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레스토랑	
	사용 목적물	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레스토랑(별첨 1. 참조)	
	연간 사용료	금000,000,000원(부가세포함) ※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 및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 등의 결정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와 제31조 제3항에 따라 매 연도별 산정 부과	
	연간 관리비	별도부과	
	관리비보증금	금000,000,000원	
	이행보증금	금000,000,000원(부과세 포함) ※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현금납부 (연간사용료의 30%이상)	
허 가 기 간	2022년 00월 00일 ~ 2025년 00월 00일 ※ 재단과 사용자간 체결한 입주 계약 허가기간은 재단이 서울새활용플라자 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간동안 유지되며, 타 기관이 서울새활용플라자 를 운영하고 관리하게 될 경우 본 입주계약은 해당기관으로 승계한다.		

사용자는 사용·수익허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사전 열람 및 숙지하였으며, 본 허가서 내용에 동의하고 붙임서류의 허가 조건으로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를 신청하였음을 확약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유재산 사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붙임 1. 「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레스토랑 사용·수익허가」 일반 조건 1부.  
2. 「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레스토랑 사용·수익허가」 특수 조건 1부.

2022. 00. 00.

사용수익허가권자    주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(종로6가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상 호 :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 표 자 : 이 경 돈 (인)

사 용 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 소 :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상 호 :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 표 자 : (인)